

경운대학교 기금운용심의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5에 따라 경운대학교의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를 준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3. 기금의 운용에 따른 투자기관 선정기준, 목표수익률, 운용한도 등 전반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 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의 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중 교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개정 2022.03.01.>

-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부총장, 기획조정처장, 행정지원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교직원, 학생, 동문, 회계 또는 재무관련 외부전문가,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0.01.>

- ④ 위원장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4항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련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직자의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 회계연도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의결)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 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 심의회의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며,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투자정보, 기타 기밀을 재임 중 또는 퇴임 후에도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8조(독립성)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사무) 심의회의 사무는 기획조정처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1.10.01.>

제10조(기타) ①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을 준수한다.

②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19.09.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사립학교법」 시행(2022.03.25.) 이후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할 당시 「사립학교법」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교원, 직원 또는 재학생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구성은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